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구 분	공제요건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회거 허용			
기 본 공 제	본인	×	×	×			
	배우자	×	○	×			
	직계존속	60세 이상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58.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		1998.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1958.12.31, 이전 1998.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추 가 공 제	위탁아동	16세 미만	○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48.12.31,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현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충급이 500만원 이하)

구 分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	○	○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	○	-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	○	
	의료비	×	×	○	
	교육비	×	○	○	직계존속 제외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	○	×	기본공제대상자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